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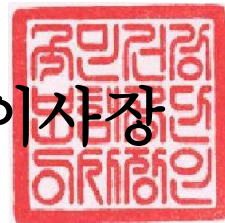
##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서 (정기)

1. 기관명 : 금강노인복지센터 (2-44150-00004)
2. 평가예정일 : 2019년 08월 30일  
다만, 사정에 따라 연장되거나,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
3. 평가범위 :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 
제3조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
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.

2019년 08월 28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※ 문의 : 대전지역본부(전화 : 044-251-7570)

# 평가 사전 준비자료 협조 안내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준비 자료를 안내 하오니 평가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준비자료

- 가. 5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
- 나. 퇴직금 지급여부 증빙 서류
- 다. 급여종류별 수급자, 직원 현황 (하단 양식 참조)
  -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는 평면도와 위치도 포함

## 2. 안내사항

- 가. 평가 예정일에 평가를 실시하며, 천재지변등의 사유외에는 평가일정 변경불가
- 나. 재가기관 평가 중 '기관평가'는 지역본부 평가팀에서 수행
  - 기관평가 후,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는 외부평가자가 방문 실시, 다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단 평가자가 수행 가능
  -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, 복지용구의 종사자 평가는 기관평가 당일 현장에서 평가팀이 실시
  - 서비스만족도 조사(유선) 지표는 공단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(고객센터)
- 다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평가의견수렴방을 통하여 평가 종료 후 의견 제시 가능
  - 경로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/ 로그인(공인인증서) / 기관평가 / 의견수렴방 등록
- ※ 장기요양기관평가는 급여의 질을 평가하는 업무로써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하는 현지조사, 서비스모니터링, 현지확인심사 등의 업무와는 구분됨을 안내합니다.

## ※ 참고양식

### ① 수급자현황

- 정기평가 : 평가매뉴얼 일반사항의 '지표적용기간'을 참고하여 지표적용 시작월부터 평가일까지 이용한 모든 수급자 (성명 가나다순)
- 수시평가 : 직전 정기평가월부터 수시평가일까지 모든 수급자 (성명 가나다순)

| 연번 | 수급자명 | 출생연도(성별)  | 주요질환 | 급여(대여)개시일 | 급여(대여)종료일 | 급여개시 인정등급 | 현재 인정등급 | 비고   |
|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1  | 김건강  | 1984년 (남) | 치매   | '17.3.1.  | '17.2.3.  | 1         |         | 병원입원 |
| 2  | 이요양  | 1984년 (여) | 중풍   | '18.4.1.  |           | 2         | 3       |      |

### ② 직원현황

- 정기평가: 평가매뉴얼 일반사항의 '지표적용기간'을 참고하여 지표적용 시작월부터 평가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(성명 가나다순)
- 수시평가: 직전 정기평가월부터 수시평가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(성명 가나다순)

| 연번 | 직원명 | 생년월일(성별)  | 자격구분  | 입사일자      | 퇴사일자       | 재직기간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|
| 1  | 김건강 | 1984년 (남) | 간호사   | '16.11.1. | '17.12.31. | 32개월 |    |
| 2  | 이요양 | 1984년 (여) | 요양보호사 | '17.1.1.  |            | 14개월 |    |